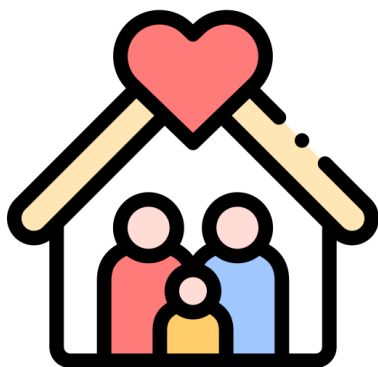


장애인 인권 우리 함께 지켜요

인권침해 예방 안내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1. 인권 및 인권침해

😊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보편·타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장애,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용모 등을 이유로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장애인 인권 침해 유형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장애,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서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이용인 인권침해 시 처리절차

인권침해의 **범위**

- 이용인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 이용인을 방치·유기하는 경우
-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 이용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 이용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 이용인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성적행동을 하는 경우
- 기타 이용인이 폭력이라고 지적하는 경우



인권침해 시 처리절차

1단계

행위인지

인권침해 행위사실 인지

- 이용인 소리함, 홈페이지 건의함을 통한 침해행위 확인
 - ▶ 기획홍보팀에서 내용 확인 후 인권침해사실 인지되면 사무국장에 보고
- 대면상담을 통한 침해행위 확인
 - ▶ 사무국장 직접 상담, 팀장 면담을 통한 침해사실을 사무국장에 보고

2단계

사실확인

인권침해사실 확인

- 인지된 상황을 토대로 침해당사자 면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실 확인
- 당해 직원 및 팀장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3단계

보호조치

이용인 보호조치

- 성폭력 : 인천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연계 상담 및 사건 처리(032-424-1366)
- 폭행 등 신체적 학대 :
 -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계 일시보호 및 상담요청(1644-8295)
 - ▶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보호조치 요청(032-715-4367)
- 위법사실 확인 시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신고(032-454-9749)
- 기타 권리침해
 - ▶ 보호자 상담을 통한 가정 보호
 - ▶ 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 등원 후 가해 당사자와 별도공간에 격리조치

4단계
가해자
조치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수위 결정 및 조치

- 법률위반사항 확인
 - ▶ 관할 경찰서의 법률위반사항 확인 시 면직 등 검토하여 의결
- 법률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
 - ▶ 당해 인사위원회가 징계 수위 결정
- 당해 가해자에게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후 조치

5단계
피해자
지원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지원 (담당 : 사무국장)

- 법률 위반사항
 -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연계 등 법률검토 지원
 - ▶ 형사사건은 경찰서 자료 제공 지원
- 법률 위반이 아닌 침해 시 조치
 - ▶ 당해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확약 요구
 - ▶ 심리·정서적 피해사실 확인 시 심리치료 지원
 - ▶ 피해당사자 요구 시 당해 직원 업무 이동 등 격리 조치
 - ▶ 당해 직원에게 인권교육 필수 수강 요구

6단계
종결

인권침해 재발 여부 확인 및 관찰 후 종결

4. 인권침해 시 대응방법

우리 복지관은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욕구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키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소리함 접수 안내

- 홈페이지 : www.ndjb.or.kr - 이용안내 - 상담 및 이용건의 게시판
- 방문접수 : 1층 로비, 이용자 소리함 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 모든 복지의 근간은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송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우편접수 : 1층로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이용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1331

인권상담 담당자

- 인권, 권익옹호 담당자 : 사무국장 최종진, 기획홍보팀 고광원(032-472-0054)

관련 기관 안내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www.naapd.or.kr / (국번없이)1644-8295 또는 112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www.icaapd.or.kr / 032-425-0900(기관번호)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www.15775364.or.kr / 02-2675-8153

5.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 ☺ 복지관은 이용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용인의 권리보호규정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 권익옹호서비스)을 제정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 ☺ 복지관은 이용인에게 이용인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내용의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 ☺ 복지관 전 직원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현장을 준수하고 이용인의 인권보장 및 학대금지 서약을 합니다.
- ☺ 복지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권익옹호교육,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 복지관은 이용인 자조모임, 간담회, 장애인대표자간담회, 부모회 등을 지원하고 사업계획과 평가 시 이용인의 참여와 공유를 의무화합니다.
- ☺ 복지관은 서비스 모니터링은 물론 이용인 고충처리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전인재활을 통하여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스스로 자립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존중, 평등, 사회통합의 기본 이념**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장애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이용인의 욕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이용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취득한 정보를 전문적 관계에 이용하는 목적이라도 이용인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하나. 서비스 과정에 이용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